



# 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처리(2015년 11월분 소득세,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)

소득세법 제128조, 동법 시행령 제185조 및 지방세법 제93조에 의거 **2015년 11월분 강남구청 원천징수 세액(소득세,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)**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,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52조5항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 예치금을 반환하여 **소득세**는 삼성세무서,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은 강남구청 세무2과에 고지서 납부 하고자 합니다.

- 1. 건 명 : 2015년 11월분 구,동직원 및 상용직·기간제근로자 등 원천징수세액
- 2. 반환금액 : \*\*\*\*\*
- 3. 상세내역 : 납부세액 + 중도퇴직자 환불세액(1명)
  - 가. 납부세액 : \*\*\*\*\*
    - 소득세 : \*\*\*\*\*
    -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: \*\*\*\*\*
  - 나. 환불세액 : \*\*\*\*\*
    - 2015.11.10.자 중도퇴직자 김학준 1명 연말정산 환급금

- 붙임 1. 2015년 11월분 원천징수 세액 신고 내역서  
 2.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
 3.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 
 4. 세입세출외현금반환의뢰서 및 청구서. 끝.

